

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

-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, 당규 제·개정안 -

2025. 12. 1.(월) 10:00



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

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의(2025. 12. 1.)

I. 의결주문

-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의결(안)

- 제9절(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) 신설 및 자구 수정

구 분	주요 내용
제9절 신설	○ 제9절(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) 신설 - 제43조(구성), 제44조(기능), 부칙(효력발생 시기)
자구 수정	○ 제9절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(내용은 현행과 같음) - 기존 당헌 제9절~제18절 → 제10절~제19절 - 기존 당헌 제43조~제101조 → 제45조~제103조

※ 별첨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23조, 제90조

[당헌 제23조(기능)]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강령·기본정책·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

[당헌 제90조(개정발의)]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제9절(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) 신설

개 정 안

제 9 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

제 43 조 (구성) ① 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·도지사, 자치구·시·군의 장, 시·도의회 의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 의원(이하 ‘선출직 공직자’라 한다)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

③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,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
④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제 44 조 (기능)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확정 및 공표
2.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실시
3. 당헌 제75조,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구성된 각급 공직후보자추천기구에 선출직 공직자의 현재 임기 중 평가결과 이첩
4. 당무감사위원회에 선출직 공직자 관련 감사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, 당무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이첩 요구
5. 윤리위원회에 선출직 공직자 관련 표창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,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 이첩 요구
6. 기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관련 관리 감독

부 칙 (2025. 12. 4) 이 당헌은 12월 4일 제18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□ 자구 수정

현 행	개 정 안
<u>제9절~제18절</u> (생략)	<u>제10절~제19절</u> (현행과 같음)
<u>제43조~제101조</u> (생략)	<u>제45조~제103조</u> (현행과 같음)

당규 제·개정안

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(2025. 12. 1.)

I. 의결주문

- 당규 제·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의결(안)

- <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> 제정 및 관련 규정 개정
- <상설위원회 규정> 개정(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신설)

구 분	주요 내용
‘선출직 공직자 평가’ 관련 당규 제·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> 제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> 제15조② ○ <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> 제16조① ○ <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> 제15조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’를 각급 선거의 후보자 심사기준으로 추가 <p>※ 당헌 개정이 완료된 때에, 이에 연동하여 제·개정된 당규는 효력을 가짐</p>
<상설위원회 규정> 개정 및 자구 수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3조(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) 신설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3조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(내용은 현행과 같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규정 제53조~제83조 → 제54조~제84조

※ 별첨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23조

[당헌 제23조(기능)]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2. 당규의 제·개정 또는 폐지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<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> 제정안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설치)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·도지사, 자치구·시·군의 장, 시·도의 회 의원, 자치구·시·군의 회 의원(이하 ‘선출직 공직자’라 한다)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, 시·도당에 시·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둔다.

제 3 조 (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)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4 조 (신분보장)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,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 2 장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

제 1 절 구성 및 운영

제 5 조 (구성 등) ①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
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,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.

제 6 조 (위원장·부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 8 조 (위원의 사임·해임 등) ①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,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,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원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대표는 위원의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⑤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9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평가규칙 심의 및 제·개정
2. 평가규칙에 따른 평가일 공고 및 평가 실시
3. 당헌 제75조,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구성된 각급 공직후보자추천기구에 선출직 공직자의 현재 임기 중 평가결과 이첩
4. 당무감사위원회에 선출직공직자 관련 감사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, 당무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이첩 요구
5. 윤리위원회에 선출직공직자 관련 표창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심의의결,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 이첩 요구

제 10 조 (평가 관할) 위원회는 평가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선출직 공직자 중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·도지사(이하 '평가대상자' 라 한다)의 활동 평가
2. 시·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에 대한 평가

제 11 조 (소집 및 의사) ①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 조 (회의의 비공개)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
제 13 조 (협조의무) 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평가대상자는 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 중 평가대상자와 친·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평가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비공개평가) ① 평가대상자의 평가항목별 점수 및 최종 환산점수 등 평가결과는 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없다.

②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열람 없이 당헌 제75조 및 제76조, 제78조에 규정된 각급 공직후보자추천기구에 전달한다.

③ 비공개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는 온라인 평가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.

제 2 절 선출직 평가규칙

제 16 조 (평가규칙) ① 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기 위한 선출직 평가규칙을 제정한다.

② 위원회는 선출직 평가규칙을 심의·의결 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, 시·도당 평가위원회에 관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규칙을 전달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평가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 3 절 국회의원 평가

제 17 조 (평가주기 및 공고) 국회의원 평가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실시 시기 및 일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30일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공표한다.

제 18 조 (평가분야 및 평가규칙) ① 국회의원 평가분야는 활동평가, 실적평가, 감·가산점 등으로 하며, 평가 시 당직활동, 의정활동, 공로, 징계, 범죄사실, 당

대표 및 원내대표의 심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, 반영 비율 등 구체적 평가방식과 절차는 평가규칙으로 정하며, 이는 원내대책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③ 제2항의 평가규칙은 평가일 30일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국회의원 평가와 관련하여 원내대책회의의 의견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하여야 한다.

제 4 절 시·도지사 평가

- 제 19 조 (평가주기 및 공고)** ① 시·도지사 평가는 시·도지사의 임기 중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실시 시기 및 일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60일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공표한다.
-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.

- 제 20 조 (평가분야 및 평가규칙)** ① 시·도지사 평가분야는 경제지표, 리더십 평가, 당 기여도 평가 등 정량지표 평가, 개인 PT 평가, 여론조사 등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, 반영 비율 등 구체적 평가방식과 절차는 평가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위원회는 전국의 인구 및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형평성 보정을 위하여 경제지표 등 정량지표의 일부 항목에 한하여 지역별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다.
 - ④ 제2항의 평가규칙은 평가일 60일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시·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

- 제 21 조 (구성)** ① 시·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
-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,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.

제 2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제·개정된 평가규칙에 따른 평가일 공고 및 평가 실시
2. 당헌 제78조에 따라 구성된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선출직 공직자의 현재 임기 중 평가결과 이첩

3. 당무감사위원회에 선출직공직자 관련 감사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 요구, 당무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이첩 요구
4. 윤리위원회에 선출직공직자 관련 표창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요구,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 이첩 요구

제 23 조 (평가 관할) ① 위원회는 평가에 있어 선출직 공직자 중 자치구·시·군의 장 및 시·도의회 의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 의원(이하 ‘평가대상자’ 라 한다)의 활동 평가를 관장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준용규정)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, 회의의 비공개 원칙, 평가대상자의 자료 제출 협조 의무, 제척·기피·회피, 선출직 평가규칙, 평가주기 및 공고, 평가분야 및 방법, 비공개평가는 제11조 내지 제15조, 제19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25 조 (실무지원부서 및 간사) 당 대표는 중앙당 및 시·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·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,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

제 26 조 (평가결과 및 자료 관리) 제15조에 따라 각급 공직후보자추천기구에 전달한 평가결과 및 회의록 등 각종 자료는 해당 각급 공직선거 종료 후 바로 폐기한다.

부 칙 (2025. 12. 1) ①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제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는 시·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 의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9조 및 제20조,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시·도지사 평가와 자치구·시·군의 장 평가에서는 평가계획과 평가규칙 공표시기를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□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5 조 (자격심사) ① (생략)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, 면접심사,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, 윤리위원회 심사결과, 현지 실태조사, 여론조사 결과, 당 기여도 등을 종합하는 평가 및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, 국민공천 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. ③~⑦ (생략)</p>	<p>제 15 조 (자격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<u>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</u>, 서류심사, 면접심사,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, 윤리위원회 심사결과, 현지 실태조사, 여론조사 결과, 당 기여도 등을 종합하는 평가 및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, 국민공천 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. ③~⑦ (현행과 같음)</p>

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6 조 (공천 배제대상 심사)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신청자가 제출한 <u>서류</u>를 바탕으로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공천 배제대상 심사를 실시한다. ②~③ (생략)</p>	<p>제 16 조 (공천 배제대상 심사)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신청자가 제출한 <u>서류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</u>를 바탕으로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공천 배제대상 심사를 실시한다. 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5 조 (자격심사) ① (생략)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, 면접심사, 당무위원회 감사결과, 윤리위원회 심사결과, 현지 실태조사,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. ③~⑦ (생략)</p>	<p>제 15 조 (자격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<u>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</u>, 서류심사, 면접심사, 당무위원회 감사결과, 윤리위원회 심사결과, 현지 실태조사,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. ③~⑦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상설위원회 규정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 53 조 (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)</p> <p>① 청년 지방의원 간의 교류, 교육 및 정책연구·개발을 위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둔다.</p> <p>②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현직 청년 지방의원으로 구성하고, 협의회를 대표할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은 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③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기능·운영·소집·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에 따라 정한다.</p>
<p><u>제53조~제83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54조~제84조</u> (현행과 같음)</p>